

진 술 조 서

성 명 : 김예슬

주민등록번호 : 960530-2417315

직 업 : 무직(휴직 중)

주 거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66, 태영데시앙 109동 2402호

등록기준지 :

직 장 주 소 :

연 락 처 : 자택전화 휴대전화 010-7778-5416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위의 사람은 정찬교에 대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5. 5. 12. 17:25경 광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와 연인 관계에 있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 : (피해자인 경우) 담당조사관으로부터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교부받고,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 우려 시 경찰에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나요

답 : 네.

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은 조사 대상자가 발달장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모든 조사 대상자에게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발달장애인법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나요. /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나요.

답 : 아니요

문 : 진술인이 김예슬인가요

답 : 네.

문 : 진술인은 피고소인과 어떠한 관계인가요

답 : 2024. 8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오늘부로 헤어질 생각이에요.

문 : 진술인이 제출한 고소장이 맞나요

답 : 네

문 : 본 고소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취하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없어요. 처음이에요.

문 : 피의자를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는 것인가요

답 : 성폭력 처벌법 촬영물 이용 협박, 폭행, 공갈죄로 고소합니다.

< 1. 성폭력 처벌법 위반 >

문 : 피의자로부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

답 : 네.

문 : 피해 일시 및 장소는 어떠한가요

답 : 2025. 4월 초중순경 서울에서 광주시 회덕동 정찬교 집으로 오는 길에 피의자의 벤츠 A200 45머8088호 승용차 안에서 협박 피해를 입었어요.

문 : 당시 피의자가 진술인에게 뭐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나요

답 : 그날 정찬교가 차 안에서 저한테 “너가 약속한거 안 지켰으니까 너네 아빠랑 언니 핸드폰 번호 찍어봐. 또 그러면 내가 사진이나 영상을 너 가족이나 다른 데다 다 뿌려버릴거야.” 라고 말했어요.

문 : 피의자가 어떠한 약속을 말한 것인가요

답 : 다른 커플과 만나는 자리에서 정찬교가 저한테 엉덩이를 보여줘봐라고 시켰는데 자기가 시켰을 때 바로바로 안 하고 분위기가 이상해지게 하나, 날 무시하냐고 말했어요.

문 : 당시 피의자가 진술인을 협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제가 교제하던 중 올해 3월 중순경 바람을 피웠는데 정찬교가 저한테 나를 만나면서 다른 남자랑 관계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해서 제가 쫓겨서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한 당일부터 사흘 동안 폭행, 공갈을 당했고, 이후 촬영물 유포 협박을 당했어요.

문 : 피의자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진과 영상은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 제 알몸사진이랑 정찬교랑 성관계한 영상, 정찬교가 시켜서 제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한 영상을 말하는 거예요.

문 : 피의자가 진술인에게 다른 여성과 성관계 하라고 시켰다는 말인가요

답 : 네. 자기 성적 취향이라고 하면서 제가 다른 남자랑 성관계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촬영했어요.

문 : 그렇다면 피의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진술인에게 성관계하는 것을 강제로 시켰나요

답 : 처음에 얘기할 때 제가 알겠다고 하고 동의를 했어요.

문 : 피의자가 위 사진과 영상들을 촬영할 당시 진술인이 동의 하였나요

답 : 네.

문 : 피의자가 알몸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할 당시 진술인 몰래 찍은 것은 아닌가요

답 : 그건 아니고 촬영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문 : 피의자가 실제 진술인의 알몸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있나요

답 : 네.

문 : 당시 피의자가 진술인의 사진과 영상을 무엇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나요

답 : 본인 핸드폰이요.

문 : 피의자 핸드폰의 기종은 어떠한가요

답 : 갤럭시 폴드, 검정색요.

문 : 피의자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당시 어떠한 감정이 들었나요

답 : 진짜로 유포할까 봐 무섭고 두려웠어요.

문 : 촬영물 유포 협박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나요

답 : 협박 당시에는 제가 녹음을 못했고, 그 이후에 제가 소형 녹음기를 갖고 다녀서 대화한 내용을 찾아보고 있으면 제출할게요.

< 2. 폭행 >

문 : 피의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나요

답 : 네.

문 : 피해 일시 및 장소,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어떠한가요

답 : 1). 2025. 3. 28. 새벽경 경기 광주시 통미로108, Q모텔에서 정찬교가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핸드폰으로 제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어요. 그리고 발로 제 옆구리를 2~3번 찼어요.

2). 2025. 3. 29. 새벽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42번길9, 삼익마에스트로 c동 주거지 앞 주차장 정찬교 벤츠 차 안에서 정찬교가 손바닥으로 제 머리채와 얼굴을 잡고 창문에 부딪혀 때리고, 주먹과 핸드폰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어요.

3). 2025. 3. 30. 새벽경 경기 광주시 통미로108, Q모텔에서 정찬교가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핸드폰으로 제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어요.

4). 2025. 3. 31. 새벽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42번길9, 삼익마에스트로 c동 601호 저희 집 안에서 정찬교가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이랑 핸드폰으로 제 머리랑 얼굴, 팔을 때렸어요.

5). 2025. 4. 25. 새벽 3시경 경기 광주시 회덕동196-6 엠포레스타3차 C동 101호 남자친구 방에서 정찬교가 주먹으로 제 오른쪽 팔을 수차례 구타해서 멍이 들었어요.

문 :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의자가 진술인을 폭행하고 공갈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때린거예요.

문 :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 네. 맞을 때마다 멍이 들었고, 첫 번째 날 맞고나서 제가 병원에 다녀왔어요.

문 : 그렇다면 폭행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답 : 네. 진단서와 멍든 사진이요.

문 : 진술인은 피의자의 폭행에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답 : 그만하라고 하면 더 심하게 때리니까 가만히 맞고만 있었어요.

문 : 피의자가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나요

답 : 핸드폰이랑 나무젓가락이 말고는 없었어요.

문 :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나요

답 : 들이 있을 때 그랬어요.

〈3. 공갈〉

문 : 피의자로부터 공갈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나요

답 : 네.

문 : 피해 일시 및 장소,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어떠한가요

답 : 2025. 4. 4. 새벽 3시경 경기 일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정찬교가
손으로 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제 머리랑 배를 때리고 모텔에 있는 나무

웃걸이로 제 머리를 수차례 때려서 웃걸이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돈을 뺏겨야 정신을 차리니까 너 지금 나한테 400만원 부치고 한 달 동안 말을 잘 들으면 주겠다. 그런데 너가 중간에 한 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돈을 안 주겠다. 지금 돈 안 주면 너는 더 처맞을거야.” 라고 협박했어요.

문 :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의자가 진술인을 폭행하고 공갈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이날은 다른 커플 이성과 스와핑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놓고 말을 안 들었다고 때린거예요.

문 :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 머리에 혹이 크게 났었는데 병원에는 안 갔어요.

문 : 진술인은 피의자의 폭행에 어떻게 대응 하였나요

답 : 가만히 맞고만 있었어요.

문 : 피의자가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나요

답 : 나무 웃걸이로 제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렸어요.

문 :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나요

답 : 아니요.

문 : 당시 피의자가 요구한 400만원을 피의자에게 이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저한테 돈을 안 주면 더 처맞는다고 해서 무서워서 돈을 입금했어요.

문 : 피의자로부터 진술인이 입금한 400만원을 돌려받았나요

답 : 아니요. 2025. 4. 5.날 제가 아빠 생일인데 돈이 없다고 돌려달라고 해서 100만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300만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문 : 공갈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있나요

답 : 머리에 흑이 났는데 사진은 못 찍었고, 정찬교 계좌로 400만원을 이체한 기록이 있습니다.

< 4. 촬영물 유포 >

문 : 피의자가 진술인의 신체 알몸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한 사실이 있나요

답 : 네.

문 : 피의자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촬영물을 유포하였나요

답 : 1). 남자친구가 2024. 9. 중순경부터 2024. 11월경까지 본인 트위터 계정에 제 알몸사진을 올렸어요.

2) 그리고 2024. 12월경 한 달동안 본인 계정으로 블루 스카이 어플을 깔아서 가입하고 제 알몸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올렸어요.

3) 남자친구가 저한테 블루스카이 계정을 만들어서 아이디랑 비번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줬는데 2025. 1. 11. 08:51. 블루스카이 제 계정 게시글에 제 가슴사진을 올렸고,

- 4) 2025. 1. 11. 18:40. 블루스카이 제 계정 게시글에 제 하의 알몸사진을 중요
부분에 모자이크를 하고 올렸어요.
- 5) 2025. 1. 12. 19:22. 블루스카이 제 계정 게시글에 저와 초대남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 6) 2025. 1. 13. 10:17. 블루스카이 제 계정 게시글에 제 전신 알몸사진을 올렸어요.
- 7) 2025. 1. 14. 14:46. 블루스카이 제 계정 게시글에 스와핑 커플 여성분과 제
알몸사진을 뒷모습을 올렸어요.
- 8) 2025. 1. 15. 12:16. 블루스카이 제 계정 게시글에 제 뒷모습 나체사진을
올렸어요.
- 9) 2025. 3. 22. 17:00. 블루스카이 제 계정 게시글에 제 뒷모습 나체사진을
올렸어요.
- 10) 2025. 3. 31. 15:20. 블루스카이 제 계정 게시글에 제 나체사진을 올렸어요.
- 11). 2025. 4. 19. 11:17. 블루스카이 제 계정 게시글에 구강성교하는 제 뒷모습
나체사진을 올렸어요.
- 12) 2025. 5. 3. 13:36. 블루스카이 제 계정 게시글에 뒷모습 나체사진을 올렸어요.
- 13) 2025. 5. 4. 13:52. 블루스카이 제 계정 게시글에 제 엉덩이가 나오는 뒷모습
사진을 올렸어요.
- 14) 2025. 5. 9. 01:28. 블루스카이 제 계정 게시글에 모자이크 안 한 제 뒷모습
알몸사진을 올렸어요.

문 : 피의자가 유포한 위 사진과 영상들은 진술인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인가요

답 : 네

문 : 피의자가 진술인의 사진과 영상을 진술인의 블루스카이 계정에 로그인하여
게시한 것인가요

답 : 네. 아마도 오빠 핸드폰으로 올린 것 같아요.

문 : 사진들과 영상을 게시할 당시 진술인의 동의를 얻었나요

답 : 아니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올렸어요.

문 : 그렇다면 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트위터 계정은 어떠한가요

답 : 트위터 닉네임이 ‘요를를’ 이고, 계정은 @dyfhffhf 이에요. 지금은 다 삭제해서
게시글이 없어요.

문 : 피의자가 진술인의 사진과 영상을 트위터와 블루스카이 계정에 게시하여 유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제 자랑도 하고 다른 커플이랑 성행위 할 사람을 구하려고요.

문 : 그렇다면 피의자와 교제하면서 실제로 다른 커플들과 스와핑한 사실이 있나요

답 : 네. 3~4번 정도 있어요.

문 : 피의자가 진술인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되었나요

답 : 처음 알게 된 것은 2024. 9월경에 남자친구가 제 알몸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나서 저한테 말해줬어요. 그 이후에는 남자친구가 블루스카이에 제 사진과 영상을 게시글로 올린 후에 저한테 이거 올렸어라고 나중에 말을 해줘서 알게되었어요.

문 : 피의자가 진술인의 알몸사진과 영상을 게시하여 유포한 것을 알고 나서 피의자에게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진 않았나요

답 : 초반에 제가 이런걸 왜 올려냐고 내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괜찮다고 어차피 얼굴 안보이지 않냐고 해서 안그러면 화를 내니까.. 그냥 제가 싸우기 싫어서 나중에는 포기했어요.

문 :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진술인의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답 : 네. 남자친구가 트위터 본인 계정에 제 사진과 영상을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블루스카이드 제 계정으로 들어가 알몸사진과 영상 게시글을 올렸는데 회원들은 다 볼 수 있는 공개 게시글이었어요.

문 :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나요

답 : 트위터 계정에 올렸던 것은 게시글을 다 삭제해서 없고, 블루스카이 게시글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문 : 피의자가 블루스카이 어플에 진술인 계정으로 게시하여 알몸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인이 스스로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제가 삭제하면 남자친구가 난리치고 소리지르고 그러니까요. 그 전부터 다른

커플들을 만나고 나면 늘 화내고 소리지르고 그랬거든요.

문 : 피의자가 트위터 및 블루스카이 어플에 진술인 계정으로 알몸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요

답 : 올릴 때 동의한 적은 없었어요.

문 : 현재는 피의자와 헤어진 상태인가요

답 : 보복이 두려워서 아직까지 헤어지자고 말은 못했는데 오늘부터 차단하고
연락을 안 받을거예요.

문 : 진술한 것 외에 추가적인 피해가 있나요

답 : 아니요. 다 진술했어요.

문 :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하나요

답 : 처벌을 원해요.

문 : 추가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 : 아니요.

문 : 이상 진술이 모두 사실인가요

답 : 네

문 :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요

답 : 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변경
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예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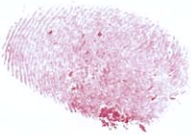
2025. 5. 12.

사법경찰관 경위

김선진



수사 과정 확인서

구 분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025. 5. 12. 17:25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2025. 5. 12. 17:25 ☐ 종료시각 : 2025. 5. 12. 20:38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2025. 5. 12. 20:38 ☐ 종료시각 : 2025. 5. 12. 20:47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없음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없음
2025. 5. 12. 사법경찰관 경위 김선진은 김예슬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김예슬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김예슬 사법경찰관 경위 김선진 	